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적 항공사의 정기편 신규 노선 허가 시 수행하던 기술검토를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에 정기편 노선 허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동·하계 정기편 운항에 관한 정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의 확보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가목·다목”을 “제1호, 제3호가목·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기편 운항으로”를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 운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 제5항에 따라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로, “서류”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예정 항공기

나.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다.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라.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마.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운항기간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기간 내 사용예정인 항공기의 기종·수(도입·처분계획을

포함한다) 및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내운송사업”을 “국내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6. 운항지점 및 4주 미만의 운항횟수 증편(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5조제8호 중 “각 목”을 “각 호”로 한다.

제5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별지 제4호서식, 제14호서식, 제21호서식,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 중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 국내 ☐ 국제 ☐ 소형	☐ 정기편 노선 ☐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서
		(신고서)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부정기편 운항의 경우에는 신고서이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정기편 노선허가 15일 부정기편 운항허가 10일 (군공항은 1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개설노선명 또는 항행의 경로		
	운항개시에정일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 정기편 노선
☐ 부정기편 운항
 을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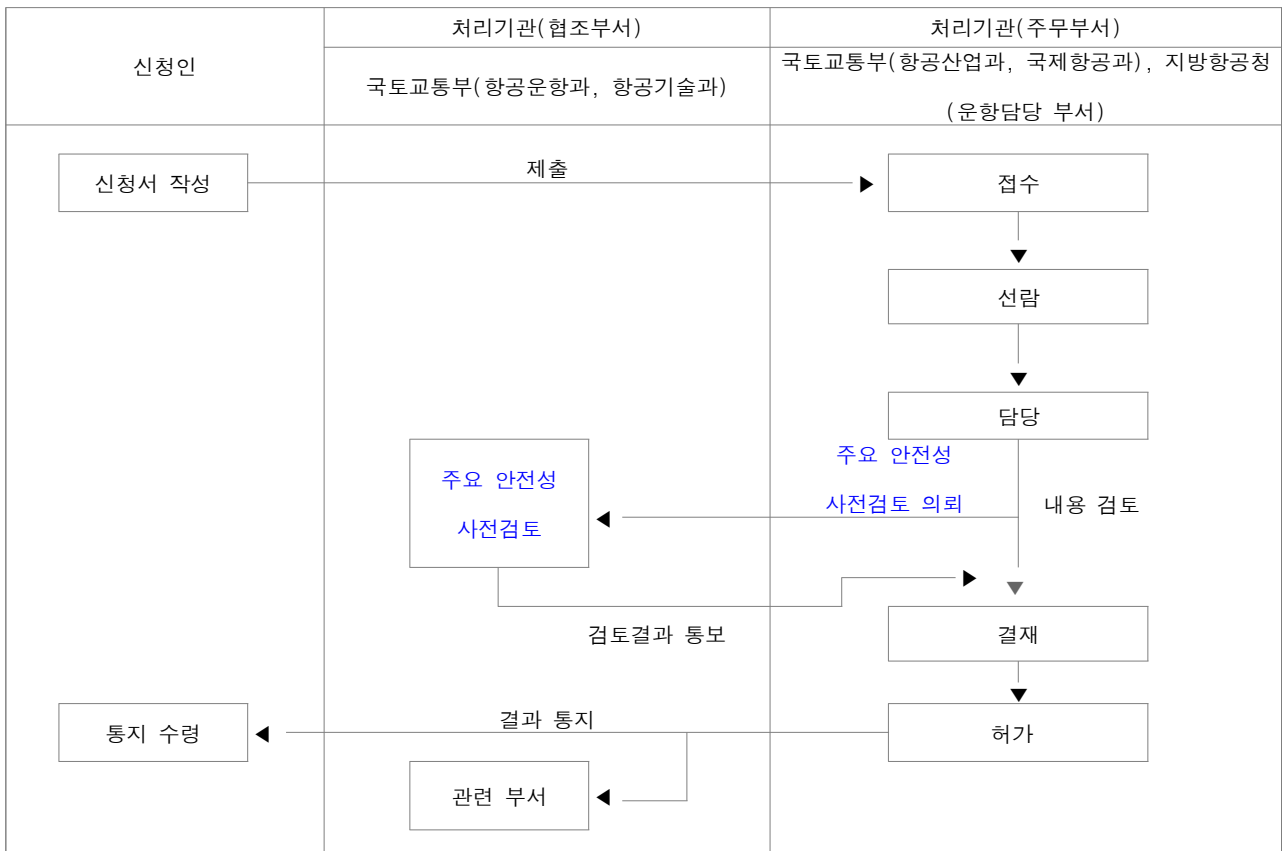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가.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가. 해당 신청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정기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을 제출합니다)	

허가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

1. 허가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국제선 허가 신청 시, 전화번호 : 044-201-4212), 항공산업과(국내선 허가 신청 시, 전화번호 044-201-4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변경예정일				
	변경사유				

「항공사업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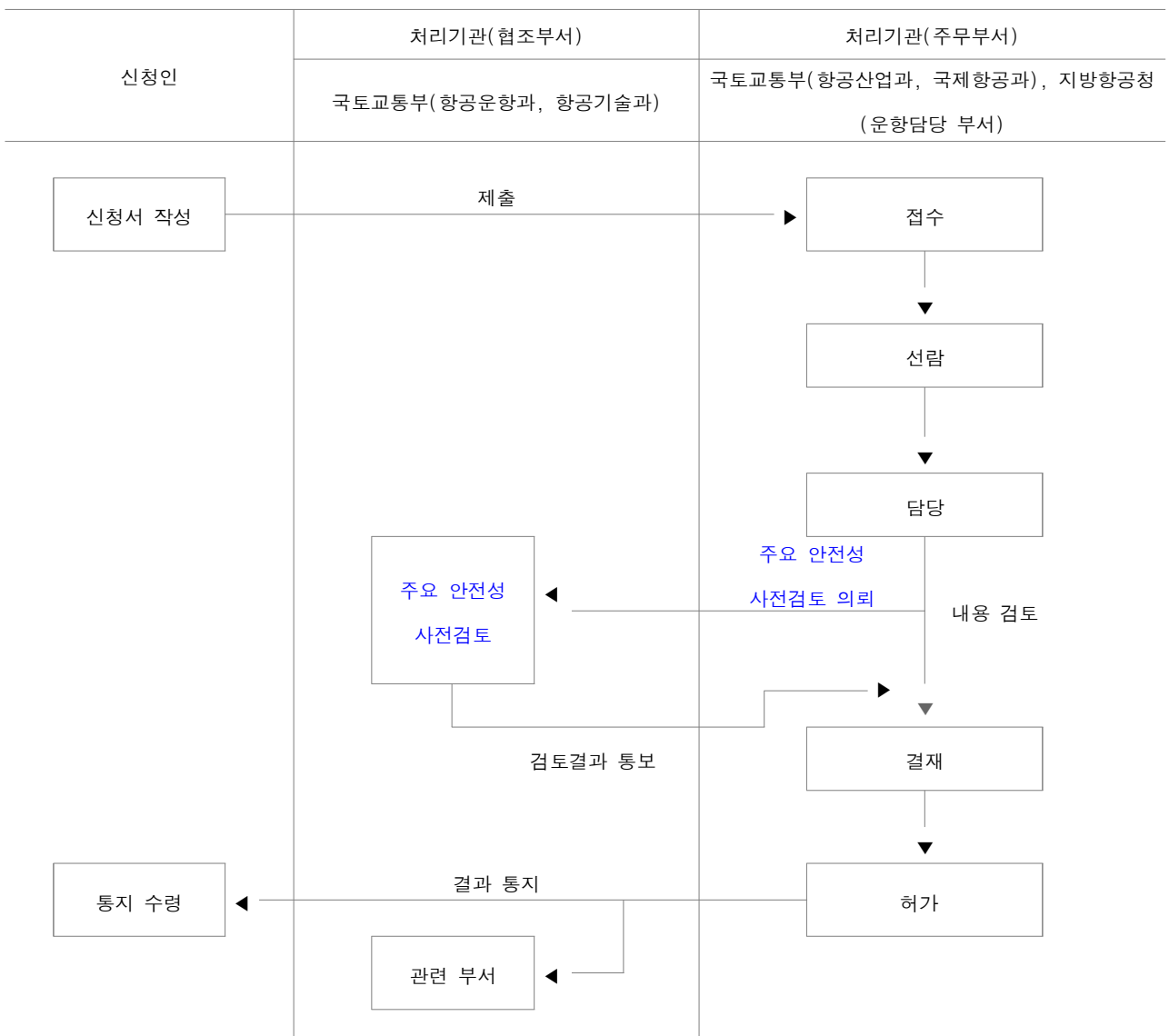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 방 항 공 청 장 귀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 2. 해당 운항기간의 변화관리에 관한 자료(「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운항기간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 양도·양수 [] 인가 신청서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당 사 자	양도 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양수 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신고) 내용	양도·양수노선 또는 사업범위			
	양도·양수가격		양도·양수일자	
	양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항공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 [] 인가를 신청
[]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 방 항 공 청 장 귀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일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 1조
담당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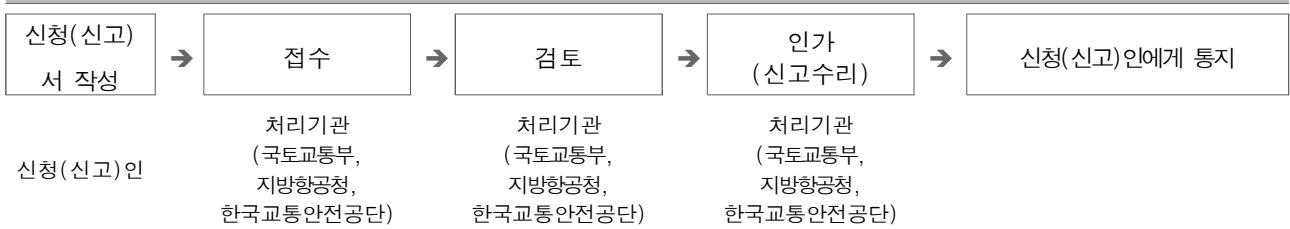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공사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1.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서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3. (생 략)

④ ~ ⑩ (생 략)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
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운항체계 변경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
로 -----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용예정 항공기

나.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다.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
시설

라.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
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마.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2.·3.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
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등록을 -----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횡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을 추가(이하 “임시중편”이라 한다)

② -----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임시증편 노선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7. · 8. (생략)
9. 항공기의 도입 · 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② · ③ (생략)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운항지점 및 4주 미만의 운항횟수 증편(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
-----국내항공운송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

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략)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 10. (생략)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8. -----
----- 각 호 -----

9. · 10. (현행과 같음)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

-----.

1. ~ 6. (생략)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8.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 중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	---